

건설정책리뷰 2023-12

상호시장진출 현황 및 업계 인식 조사에 따른 전문건설 대응 방안

박 승 국·이 종 광·홍 성 진

2023.12

요 약

- **생산체계의 개편은 종합과 전문업종의 구분 없이 건설공사 수행능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에게 많은 수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설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종합과 전문업체간의 건설공사 수주현황이 매우 불균형 상태에 있고 전문건설업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를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전문건설업체는 계속 불리한 위치에서 종합건설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음
 - 본 연구는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의 실태 및 업계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문건설 업역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설생산체계 개편 이후 특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현상은 업역폐지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대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 불균형임**

 - 2022년 공공공사 상호시장진출 규모는 약 2.08조원이며, 종합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약 1.61조원, 전문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0.46조원임
 - 2억원 ~ 10억원 구간의 소규모 전문공사에서 상호시장진출(약 82%)이 주로 이루어짐
 - 종합업체들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영리목적만으로 주로 소규모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음

- **상호시장진출제도에 대한 업계 인식 및 전망 조사 결과**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총 1,014개사 종합·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체의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만족도 및 평가를 조사함

- **(조사결과)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 임
 - 부정적 평가의 경우 업종별로 전문업체 대표들은 87.3%, 종합업체 대표들은 77.0%로 전문업체 대표들이 종합업체 대표들보다 더 높은 부정 평가를 보였음

- **(조사결과)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가 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에 미친 영향**
 - 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로 절대다수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건설공사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9.7% 였음

- **(조사결과)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종합건설업 체에게 부여한 점'이 29.6%로 1순위로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조사됨.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자격을 제한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2순위와 3순위로 평가됨

- **(조사결과)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진출 제한 여부**
 - 현재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진출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4%로 대다수 건설업체 대표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결과)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영 여부**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3%로 대다수가 제도의 지속 운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의 응답을 보임

- **(개선방안)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확대 및 영구화**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 2억원 ~ 3.5억원 구간의 일부 전문공사가 보호되고 있음에도 2022년 종합과 전문업체의 상호시장진출 격차는 약 4배에 이르고 있어 전문업체 보호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확대 운영 및 영구화 필요
 -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확대 및 연장을 위해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순공사비 3.5억원과 5억원으로 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임
 - 발의된 전문공사 보호구간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되어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4.3억원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 **(개선방안) 상호시장진출 허용을 발주자 선택사항으로 임의화**
 - 상호시장진출 허용을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자에게 의무화함으로써 발주자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건설공사 상호시장진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발주세부기준 제8조를 발주자가 선택하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하도록 재량권을 부여 함으로써 무분별한 상호 시장진출의 일부 해소
-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하도록 하여 현행 국내 건설산업의 이원적 업종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문업종의 특성 유지가 가능함

■ **(개선방안) 발주자 승낙시 동일 업종 하도급 허용함으로써 전문업역 확보**

-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예외로 함으로써 전문건설 업역 확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II. 상호시장진출 현황 및 업계 인식조사	3
1. 상호시장진출 현황	3
2. 상호시장진출제도에 대한 업계 인식 및 전망 조사	5
III.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에 따른 전문건설 대응 방안	29
1. 주요 외국의 건설산업 생산체제 및 시사점	29
2. 전문건설 업역 확보의 필요성	43
3. 전문건설 대응 방안	45
IV. 결론	49
참고문헌	51
부록	52

I. 서론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건설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변화 속에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각자의 업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생산방식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 기술력 및 품질향상 등의 목적이 주요 배경이었음
 -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업역규제를 폐지하여 2021년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였고, 2022년에 민간공사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음
 -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취지로 10억 미만 공사에서 종합업체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할 예정임
- 생산체계의 개편은 종합과 전문업종의 구분 없이 건설공사 수행능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에게 많은 수주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설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종합과 전문업체간의 건설공사 수주현황이 매우 불균형 상태에 있고 전문건설업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결과 종합과 전문의 상대방 시장 진출 현황은 매우 불균형 상태에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생산체계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의 업계 인식을 파악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를 폐지해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제도에 대하여 건설업체 대표 84.2%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종합·전문 건설업체 대표의 84.2%가 상호 시장 진출 허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9.1%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부정적'(15.1%), '대체로 긍정적'(11.8%), '매우 긍정적'(3.2%) 순으로 나타났음

-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전문업체 대표들은 87.3%, 종합업체 대표들은 77.0%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전문업체의 부정적 인식이 종합업체보다 높았음
 -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이 29.6%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건설업체 대표의 83.3%는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불과 하였음
-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력이 크고 업역이 넓은 종합건설업체에게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인 전문공사를 빼앗기고 있다는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를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전문건설업체는 계속 불리한 위치에서 종합건설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음
-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업역 기반 붕괴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귀결될 것임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원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내 건설 생산체계 환경에서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설산업의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은 불가능할 것임
 - 특히 건설공사 시공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전문건설업의 기반이 붕괴되거나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국내 건설산업의 이원적 업종시스템의 장점은 발휘되지 못하고 종합 및 전문업체간 균형적인 발전은 요원할 것임
- 본 연구는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의 실태 및 업계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문건설 업역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상호시장진출 현황 및 업계 인식조사

1. 상호시장진출 현황

- 2022년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공공사는 약 11.1조원으로 공공공사 42조원의 약 26% 임
 - 2022년 종합공사는 7.2조원을 허용했으며, 전문공사는 3.9조원을 허용했음
- 건설생산체제 개편 이후 특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현상은 업역폐지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대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 불균형임
 - 2022년 공공공사 상호시장진출 규모는 약 2.08조원이며, 종합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약 1.61조원, 전문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0.46조원 임
 - 2억원 ~ 10억원 구간의 소규모 전문공사에서 상호시장진출(약 82%)은 주로 이루어짐
 - 3.5억원 ~ 5억원의 소규모 전문공사에서 약 67%의 상호시장진출이 이루어짐. 2억원 미만의 공사는 현재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2억원 ~ 3.5억원의 전문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 상호시장진출을 일부 허용하고 있어 진출 비율이 낮은 편임
 -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보다 약 4.0배 더 높음
 - 종합업체들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영리목적만으로 주로 소규모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음
- 2022년 부터는 민간공사에도 상호시장진출을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민간공사 부문에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에 있어서 가시적인 결과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상호시장진출 규모는 매우 미미한 상태임

- 민간공사의 발주자 특성으로는 공공공사에 비하여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민간공사의 경우 업종 및 공사종류 등 법령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특히 중소형 공사 민간발주자는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임
- 민간시장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업체 선정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민간공사에서 전문업체들이 종합건설업체들과 비교 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종합업체들의 기업규모, 관리 및 영업 능력, 시공범위 등이 전문건설업체에 비하여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어 민간 발주자를 설득하기에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 비해 용이함
 - 전문건설업체 측면에서 민간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비중은 공공부문 진출 비중 이상으로 볼 수 없음. 전문간 컨소시엄으로 종합공사 참여 허용시에도 수주 활성화는 어려운 상황임
- 상호시장진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은 종합건설업체가 현재의 등록기준과 상호시장 진출 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전문공사의 진출에 제한이 없어, 직접시공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내의 모든 종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종합공사 진출 시 종합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해야하는 어려움, 종합공사를 낙찰받은 후에도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는 시공난이도 등 많은 규제사항으로 인해 전문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

2. 상호시장진출제도에 대한 업계 인식 및 전망 조사

가.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현행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에 관한 건설 관련 기업인들의 정책 만족도 및 평가를 조사하여 정책에 대해 의견 수렴
- 조사를 통해 도출된 관계 기업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발전의 방향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2) 조사 설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총 1,014개사 종합·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체의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만족도 및 평가를 조사
 - 조사기간: 2023년 7월 17일 ~ 8월 17일
 - 조사대상: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대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및 모바일웹을 혼용하여 조사
 - 설문 회수율: 16.9%(5,988개 기업 리스트 중 1,014개사 응답)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
 -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3) 조사 자료 수집 방법

- 전화면접 실사 실시: 전문조사원은 조사 성격에 가장 적합한 조사원을 선발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와 모바일웹 조사 등 기업인의 참여와 응답률 제고를 위해 2가지 조사 방법을 사용
 - 참여율 제고를 위해 협조 공문 등을 활용해 조사 동기 유발

- 모바일웹 조사 참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전화면접 조사로 면접원이 직접 연락을 취해 대상자와 인터뷰 응답 조사를 취함

〈표 2-1〉 조사 기업의 응답 특성

구분		기업 수	비율(%)
전체		1,014	100.0
업체 구분	전문건설업체	714	70.4
	종합건설업체	300	29.6
기업 유형	영세기업	703	69.3
	소기업	286	28.2
	중기업 이상	25	2.5
매출액 (2022년)	10억 미만	484	47.7
	10~50억 미만	430	42.4
	50억 이상	100	9.9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61	6.0
	1990년대	274	27.0
	2000년대	381	37.6
	2010년 이후	298	29.4
보유업종수	1개	506	49.9
	2개	318	31.4
	3개	137	13.5
	4개 이상	53	5.2
지역	수도권	239	23.6
	충청권	179	17.7
	영남/강원권	377	37.2
	호남/제주권	219	21.6

〈표 2-2〉 조사 기업 현황 및 내용

구분	내 용
기업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규모 / • 매출액 • 설립연도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평가 및 산업발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에 따른 경쟁력 영향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에 따른 품질 및 기술력 영향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의 발주자 만족 평가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운영 여부 •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제한 여부 •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향후 전망

(4) 조사 검증 및 자료 처리

○ 조사자료 확인 및 검증

- 응답된 자료에 대한 분류 및 정리와 수정·보완 작업 수행
- 응답내용 누락이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확인 및 검수 작업실시, 자료 보완 작업 완료 된 후 최종 유효 자료 확정 함
- 조사된 자료 전체에 대해 신뢰도를 검증하는 부실자료에 대한 보완을 거친 후 유효 자료에 대해 통계 처리함

○ 자료처리 및 통계

- 최종 확정된 조사 자료는 코딩(Coding), 에디팅(Editing) 과정을 거치며, 자료 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확인과 수정을 통해 정확한 자료 확보함
- 사회과학 전산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 등을 분석 실시함

(5) 지표 산정 방식 및 평가 척도

○ 지표 산정 방식

- 평가 척도 문항은 ‘매우 긍정(만족), 대체로 긍정(만족하는 편), 대체로 부정(불만족하는 편), 매우 부정(불만족)’ 의 4점 척도로 구성함
- 100점 평점은 구간별 0점, 33.3점, 66.7점, 100점으로 환산함

○ 평가 척도

〈표 2-3〉 조사 평가 척도

전반적인 평가	점수	100점	66.7점	33.3점	0점
	분류	매우 긍정	대체로 긍정	대체로 부정	매우 부정

나. 조사 결과 요약

(1)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 임
 - 매우 부정적은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건설업체 대표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는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
 -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긍정평가는 15.0%에 그쳤으며 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 임
 - 부정적 평가의 경우 업종별로 전문업체 대표들은 87.3%, 종합업체 대표들은 77.0%로 전문업체 대표들이 종합업체 대표들보다 더 높은 부정 평가를 보였음

〈표 2-4〉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매우 긍정적(1)	대체로 긍정적(2)	대체로 부정적(3)	매우 부정적(4)	잘 모름	긍정적 (1+2)	부정적 (3+4)
전체	3.2	11.8	15.1	69.1	0.8	15.0	84.2
전문업체	2.7	9.1	13.0	74.2	1.0	11.8	87.3
종합업체	4.3	18.3	20.0	57.0	0.3	22.7	77.0

(2)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건설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로 절대다수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전혀 향상 되지 않음 71.3%, 별로 향상 되지 않음 18.7% 였음
 - ‘향상 되었다’는 응답은 9.4% (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2%)로 조사됨

〈표 2-5〉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건설산업 경쟁력 영향 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매우 긍정적(1)	대체로 긍정적(2)	대체로 부정적(3)	매우 부정적(4)	잘 모름	긍정적 (1+2)	부정적 (3+4)
전체	2.2	7.2	18.7	71.3	0.6	9.4	90.0
전문업체	2.2	5.7	15.5	75.9	0.6	8.0	91.5
종합업체	2.0	10.7	26.3	60.3	0.7	12.7	86.7

(3)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품질 및 기술력에 미친 영향

- 상호시장진출 허용이 건설공사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9.7% 였으며, 세부적으로 전혀 향상 되지 않음 67.9%, 별로 향상 되지 않음 21.9% 임
 - ‘향상 되었다’는 9.5% (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3%)로 나타나, 건설업체 대표 10명 중 9명의 대부분의 다수는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었다고 조사됨

〈표 2-6〉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품질 및 기술력에 미친 영향 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매우 긍정적(1)	대체로 긍정적(2)	대체로 부정적(3)	매우 부정적(4)	잘 모름	긍정적(1+2)	부정적(3+4)
전체	2.2	7.3	21.9	67.9	0.8	9.5	89.7
전문업체	2.1	6.0	19.6	71.3	1.0	8.1	90.9
종합업체	2.3	10.3	27.3	59.7	0.3	12.7	87.0

(4)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게 부여한 점’이 29.6%로 1순위로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조사됨
 -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자격을 제한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2순위와 3순위로 조사됨
 - 이어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을 전문건설업체에게 부여한 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었음

〈표 2-7〉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문제점 1순위 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전문공사 시공자격 종합업체 부여	전문업체 종합시공 진출 제한	입찰 경쟁 과열화	종합공사 시공자격 전문업체 부여	타 업종 진출업체 불법하도급 감행	발주자 혼란 및 행정부담 증가	문제 없음	잘 모름
전체	29.6	26.4	21.8	10.0	5.8	4.1	1.2	1.1
전문업체	34.5	30.3	16.5	8.8	5.9	2.8	0.6	0.7
종합업체	18.0	17.3	34.3	12.7	5.7	7.3	2.7	2.0

(5)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영 여부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3%로 대다수가 제도의 지속 운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의 응답을 보임
- 반면에,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로 한자리 수에 그쳤음

〈표 2-8〉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영 여부 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제도 더 활성화 시켜야	현행 유지해야	제도 폐지해야	잘 모름
전체	8.9	7.1	83.3	0.7
전문업체	8.0	5.7	85.4	0.8
종합업체	11.0	10.3	78.3	0.3

(6)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진출 제한 여부

- 현재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진출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4%로 대다수 건설업체 대표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에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8%로 건설업체 대표 4명 중 3명이 현행대로 제한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음

〈표 2-9〉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진출 제한 여부 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자유로운 경쟁 위해 제한 폐지	영세 업체 보호 위해 현행 제한 유지	잘 모름
전체	21.8	77.4	0.8
전문업체	16.8	82.4	0.8
종합업체	33.7	65.7	0.7

(7)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 향후 전망

-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의 향후 건설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82.1%로 매우 높은 응답을 보임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0.7%, ‘전문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5.9%에 그쳤음

〈표 2-10〉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 향후 전망 조사 결과 (단위 : %)

구분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종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화될 것	전문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	잘 모름
전체	82.1	10.7	5.9	1.3
전문업체	85.4	8.4	4.9	1.3
종합업체	74.0	16.3	8.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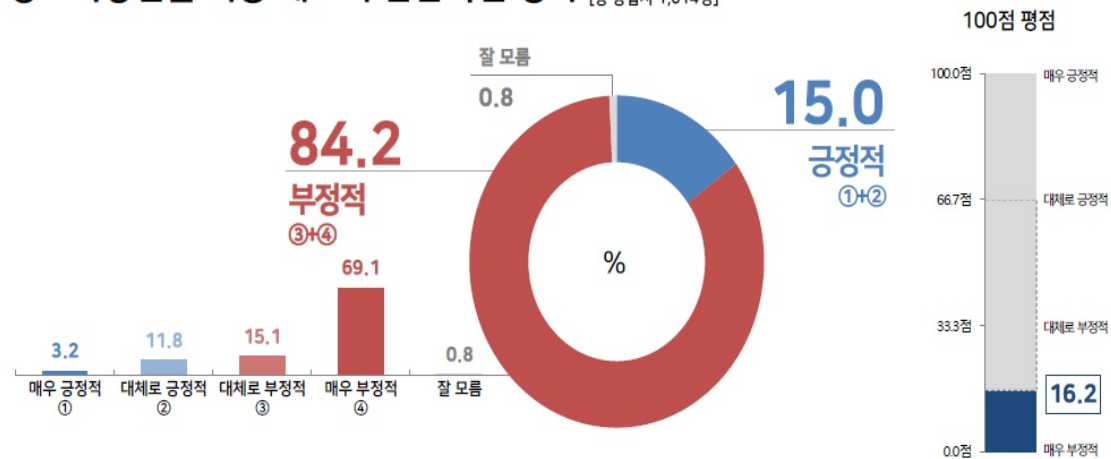
다. 조사 결과 세부 내용

(1)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현재 시행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4.2%였으며 세부적으로 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나타났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0%였으며 세부적으로 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에 그쳤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8%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종합 및 전문 업종별이나 기업규모, 매출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업종별로 전문업체에서 부정적 평가가 87.3%로, 종합업체의 77.0%보다 10.3%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됨
- 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는 16.2점으로 매우 낮게 조사됨

- 기업규모별로 부정적 평가는 영세기업에서 87.2%, 소기업에서 78.0%, 중기업 이상에서 72.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임
- 매출규모별로 부정적 평가가 '10억 미만' 업체에서 89.9%, '10억~50억 미만' 81.2%, '50억 이상' 70.0%로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설립 연도별로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91.8%로 10명 중 9명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1990년대 84.7%, 2000년대 83.5%, 2010년 이후 83.2% 순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업력이 길수록 부정적 평가 또한 높은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충청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87.2%로 다른 지역 대비 높았고, 수도권에서 81.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총 응답자 1,014명]



[그림 2-1]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단위: %)

〈표 2-11〉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의 업체, 기업유형, 매출액, 설립연도 보유업종수 및 지역별 세부 평가 결과(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 (1)	대체로 긍정적 (2)	대체로 부정적 (3)	매우 부정적 (4)	잘 모름	긍정적 (1+2)	부정적 (3+4)	100점 평점	
전체	(1014)	3.2	11.8	15.1	69.1	0.8	15.0	84.2	16.2	
업종구분	전문업체	(714)	2.7	9.1	13.0	74.2	1.0	11.8	87.3	13.2
	종합업체	(300)	4.3	18.3	20.0	57.0	0.3	22.7	77.0	23.3
기업유형	영세기업	(703)	2.7	9.5	12.4	74.8	0.6	12.2	87.2	13.3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 ①	대체로 긍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③	매우 부정적 ④	잘 모름	긍정적 ①+②	부정적 ③+④	100점 평점	
	소기업	(286)	3.8	16.8	20.6	57.3	1.4	20.6	78.0	22.2
	중기업 이상	(25)	8.0	20.0	28.0	44.0	0.0	28.0	72.0	30.7
매출액 (2022)	10억 미만	(484)	2.5	6.8	11.6	78.3	0.8	9.3	89.9	11.0
	10~50억 미만	(430)	3.0	14.9	18.4	62.8	0.9	17.9	81.2	19.2
	50억 이상	(100)	7.0	23.0	18.0	52.0	0.0	30.0	70.0	28.3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61)	1.6	6.6	13.1	78.7	0.0	8.2	91.8	10.4
	1990년대	(274)	1.8	13.1	12.4	72.3	0.4	15.0	84.7	14.8
	2000년대	(381)	3.7	12.1	15.2	68.2	0.8	15.7	83.5	16.9
	2010년 이후	(298)	4.0	11.4	17.8	65.4	1.3	15.4	83.2	17.8
보유 업종수	1개	(506)	3.4	11.7	18.6	65.2	1.2	15.0	83.8	17.5
	2개	(318)	1.6	11.9	11.3	74.5	0.6	13.5	85.8	13.4
	3개	(137)	4.4	11.7	10.9	73.0	0.0	16.1	83.9	15.8
	4개 이상	(53)	7.5	13.2	15.1	64.2	0.0	20.8	79.2	21.4
지역	수도권	(239)	4.2	12.6	16.3	65.3	1.7	16.7	81.6	18.3
	충청권	(179)	2.2	10.6	8.4	78.8	0.0	12.8	87.2	12.1
	영남권/강원	(377)	3.4	11.9	16.4	67.6	0.5	15.4	84.1	17.0
	호남권/제주	(219)	2.3	11.9	16.9	68.0	0.9	14.2	84.9	16.0
전반적 평가	긍정적 ①+②	(152)	21.1	78.9	0.0	0.0	0.0	100.0	0.0	-
	부정적 ③+④	(854)	0.0	0.0	17.9	82.1	0.0	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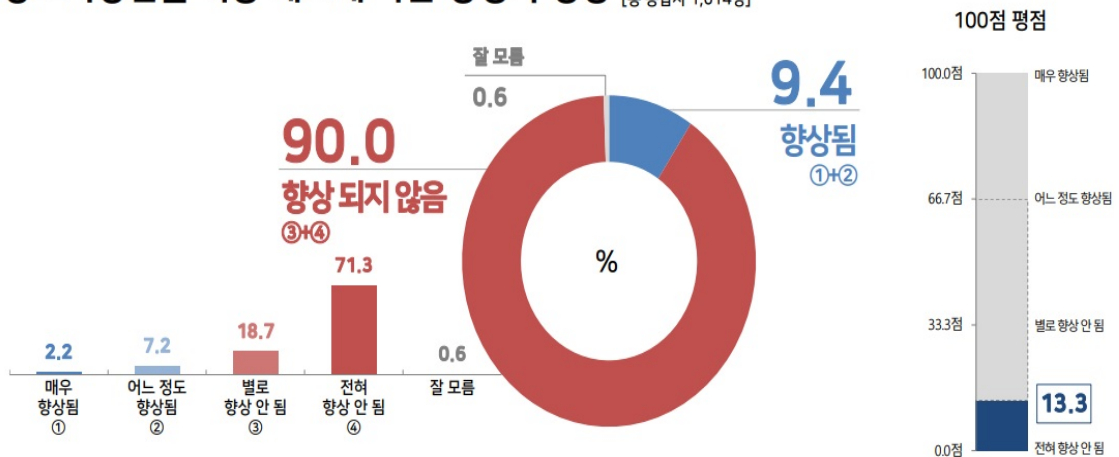
(2)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건설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0.0%였으며, 전혀 향상 안 됨 71.3%, 별로 향상 안 됨 18.7%로 나타난 반면, '향상 되었다'는 응답은 9.4%이고 세부적으로 매우 향상 2.2% 및 어느 정도 향상 7.2%로 한 자릿수에 그쳤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6%로 나타남

- 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품질 및 기술력 영향은 13.3점으로 낮게 조사됨

- 상호시장진출제도 평가에 따라서는 긍·부정 평가층 별 응답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긍정 평가층에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2.8%였던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98.7%에 달했음
- 종합 및 전문업종·기업규모·매출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세부 계층에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대 응답보다 많았고, 업종별로 전문업체가 91.5%로 종합업체의 86.7%보다 다소 높았음
- 기업규모별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영세기업에서 91.9%, 소기업 86.0%, 중기업 이상 84.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됨
-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건설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라는 응답 특성이 강해졌으며, 특히 매출규모 ‘10억 미만’의 업체 대표들이 93.6%로 ‘향상되지 않았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설립연도별로 1990년 이전(93.4%), 1990년대(93.1%)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명 중 9명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다음으로는 2000년대가 89.0%, 2010년 이후가 87.9%의 순서를 나타냄
 - 건설 업력이 길수록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의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충청권과 영남권/강원권에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 92.7%, 90.7%로 다른 지역 대비 높았고, 수도권에서는 87.4%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경쟁력 영향 [총 응답자 1,014명]



[그림 2-2]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 (단위: %)

〈표 2-12〉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에 따른 경쟁력 향상 세부 평가 결과(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향상됨 ①	어느 정도 향상됨 ②	별로 향상되지 않음 ③	전혀 향상되지 않음 ④	잘 모름	향상됨 ①+②	향상되지 않음 ③+④	100점 평점
전 체		(1014)	2.2	7.2	18.7	71.3	0.6	9.4	90.0	13.3
업종 구분	전문업체	(714)	2.2	5.7	15.5	75.9	0.6	8.0	91.5	11.3
	종합업체	(300)	2.0	10.7	26.3	60.3	0.7	12.7	86.7	18.0
기업 유형	영세기업	(703)	1.8	5.7	14.8	77.1	0.6	7.5	91.9	10.6
	소기업	(286)	2.8	10.5	26.2	59.8	0.7	13.3	86.0	18.7
	중기업 이상	(25)	4.0	12.0	44.0	40.0	0.0	16.0	84.0	26.7
매출액 (2022)	10억 미만	(484)	1.0	4.8	14.7	78.9	0.6	5.8	93.6	9.1
	10~50억 미만	(430)	2.6	8.6	20.9	67.2	0.7	11.2	88.1	15.4
	50억 이상	(100)	6.0	13.0	29.0	52.0	0.0	19.0	81.0	24.3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61)	0.0	6.6	21.3	72.1	0.0	6.6	93.4	11.5
	1990년대	(274)	1.8	5.1	19.0	74.1	0.0	6.9	93.1	11.6
	2000년대	(381)	2.1	8.1	17.8	71.1	0.8	10.2	89.0	13.6
	2010년 이후	(298)	3.0	8.1	19.1	68.8	1.0	11.1	87.9	14.9
보유 업종수	1개	(506)	1.8	8.5	21.7	66.8	1.2	10.3	88.5	14.9
	2개	(318)	2.5	5.3	15.4	76.7	0.0	7.9	92.1	11.2
	3개	(137)	1.5	6.6	13.9	78.1	0.0	8.0	92.0	10.5
	4개 이상	(53)	5.7	7.5	22.6	64.2	0.0	13.2	86.8	18.2
지역	수도권	(239)	2.9	8.4	23.0	64.4	1.3	11.3	87.4	16.4
	충청권	(179)	1.7	5.6	14.5	78.2	0.0	7.3	92.7	10.2
	영남권/강원	(377)	1.3	7.7	18.6	72.1	0.3	9.0	90.7	12.7
	호남권/제주	(219)	3.2	6.4	17.8	71.7	0.9	9.6	89.5	13.5
전반적 평가	긍정적 ①+②	(152)	13.8	42.1	34.9	7.9	1.3	55.9	42.8	-
	부정적 ③+④	(854)	0.1	0.9	15.6	83.1	0.2	1.1	98.7	-
경쟁력 향상	향상됨 ①+②	(95)	23.2	76.8	0.0	0.0	0.0	100.0	0.0	-
	향상되지 않음 ③+④	(913)	0.0	0.0	20.8	79.2	0.0	0.0	100.0	-

(3)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품질 및 기술력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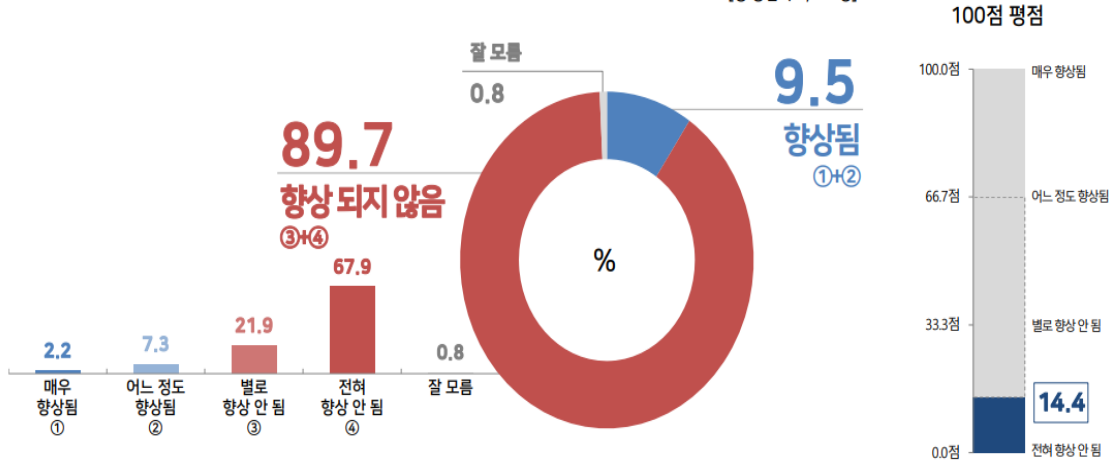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9.7%로 상당히 높았으며, 세부적으로 전혀 향상 안 됨 67.9%, 별로 향상 안 됨 21.9%로 나타난 반면, ‘향상 되었다’는 응답은 9.5%(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3%)로 한 자릿수에 불과 하였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8%임
 - 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품질 및 기술력 영향은 14.4점으로 조사됨
- 종합 및 전문업종·기업규모·매출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세부 계층에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음
- 기업규모별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영세기업에서 91.5%, 소기업 86.7%, 중기업 이상 76.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됨
- 매출규모별로 ‘10억 미만’ 업체에서 93.4%, ‘10억~50억 미만’ 88.1%, ‘50억 이상’ 79.0%로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의 건설산업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 설립연도와 무관하게 ‘향상되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1990년 이전(95.1%), 1990년대(92.7%)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를 상회함. 다음으로는 2010년 이후(88.9%), 2000년대(87.4%) 순임
- 상호시장진출제도 평가에 따라서는 긍·부정 평가층 간 응답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긍정 평가층에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4.7%였던 반면, 부정 평가층에서는 98.1%에 달했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4.4%로 다른 지역 대비 높았음

〈표 2-13〉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가 품질 및 기술력에 미친 영향 세부 평가 결과(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향상됨 ①	어느 정도 향상됨 ②	별로 향상되지 않음 ③	전혀 향상되지 않음 ④	잘 모름	향상됨 ①+②	향상되지 않음 ③+④	100점 평점
전 체		(1014)	2.2	7.3	21.9	67.9	0.8	9.5	89.7	14.4
업종 구분	전문업체	(714)	2.1	6.0	19.6	71.3	1.0	8.1	90.9	12.8
	종합업체	(300)	2.3	10.3	27.3	59.7	0.3	12.7	87.0	18.4

구분	사례수	매우 향상됨 ①	어느 정도 향상됨 ②	별로 향상되지 않음 ③	전혀 향상되지 않음 ④	잘 모름	향상됨 ①+②	향상되지 않음 ③+④	100점 평점	
기업 유형	영세기업	(703)	1.7	5.8	17.9	73.5	1.0	7.5	91.5	11.7
	소기업	(286)	3.1	9.8	30.1	56.6	0.3	12.9	86.7	19.8
	중기업 이상	(25)	4.0	20.0	40.0	36.0	0.0	24.0	76.0	30.7
매출액 (2022)	10억 미만	(484)	1.0	4.8	18.2	75.2	0.8	5.8	93.4	10.3
	10~50억 미만	(430)	2.8	8.4	24.0	64.2	0.7	11.2	88.1	16.5
	50억 이상	(100)	5.0	15.0	31.0	48.0	1.0	20.0	79.0	25.6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61)	0.0	4.9	31.1	63.9	0.0	4.9	95.1	13.7
	1990년대	(274)	2.2	4.7	21.9	70.8	0.4	6.9	92.7	12.7
	2000년대	(381)	1.6	10.2	20.5	66.9	0.8	11.8	87.4	15.3
	2010년 이후	(298)	3.4	6.4	21.8	67.1	1.3	9.7	88.9	15.1
보유 업종수	1개	(506)	2.2	7.9	23.9	64.8	1.2	10.1	88.7	15.6
	2개	(318)	1.9	6.6	20.1	71.1	0.3	8.5	91.2	13.0
	3개	(137)	1.5	5.8	19.7	72.3	0.7	7.3	92.0	12.0
	4개 이상	(53)	5.7	9.4	18.9	66.0	0.0	15.1	84.9	18.2
지역	수도권	(239)	2.9	8.4	25.9	61.5	1.3	11.3	87.4	17.4
	충청권	(179)	1.1	3.9	14.5	79.9	0.6	5.0	94.4	8.6
	영남권/강원	(377)	1.9	7.4	23.1	67.1	0.5	9.3	90.2	14.6
	호남권/제주	(219)	2.7	8.7	21.5	66.2	0.9	11.4	87.7	15.8
전반적 평가	긍정적 ①+②	(152)	13.8	40.8	37.5	7.2	0.7	54.6	44.7	-
	부정적 ③+④	(854)	0.1	1.2	18.9	79.3	0.6	1.3	98.1	-
품질/ 기술 영향	향상됨 ①+②	(96)	22.9	77.1	0.0	0.0	0.0	100.0	0.0	-
	향상되지 않음 ③+④	(910)	0.0	0.0	24.4	75.6	0.0	0.0	100.0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품질 및 기술력 영향 [총 응답자 1,014명]



[그림 2-3]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품질 및 기술력에 미친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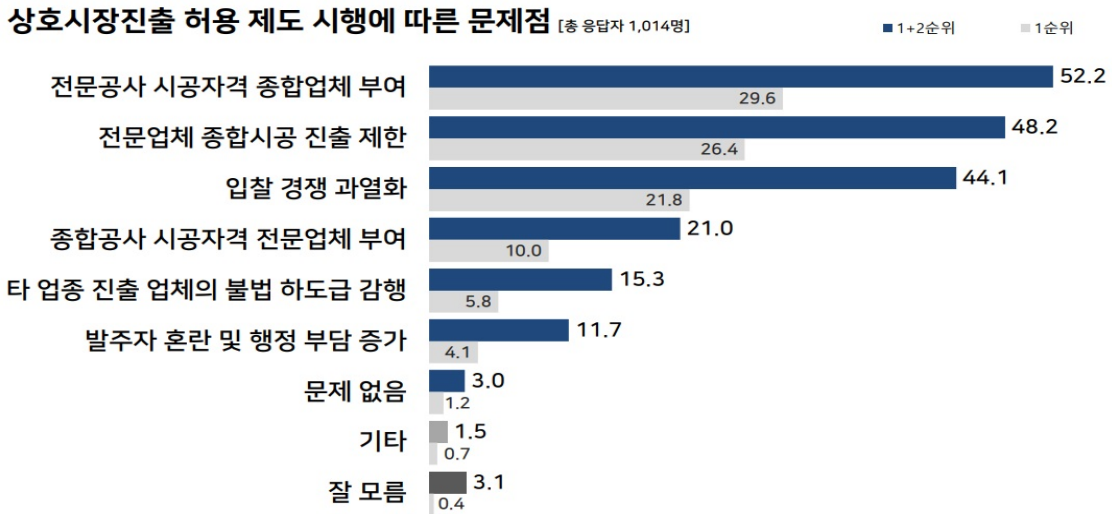
(4)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의 조사결과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전문공사 시공자격 종합업체 부여’(29.6%), ‘전문업체 종합시공 진출 제한’(26.4%), ‘입찰 경쟁 과열화’(21.8%), ‘종합공사 시공자격 전문업체 부여’(10.0%), ‘타 업종 진출 업체의 불법 하도급 감행’(5.8%), ‘발주자 혼란 및 행정 부담 증가’(4.1%), ‘문제 없음’(1.2%) 순으로 조사됨. ‘기타’와 ‘잘 모르겠다’는 각 0.7%, 0.4%임
 - 1순위 기준 응답 항목별로 ‘전문공사 시공자격 종합업체 부여’는 기업유형별 전문업체(34.5%), 기업규모별 영세기업(32.1%), 매출규모별 10억 미만(32.4%), 설립연도별 2010년 이후(33.9%), 1990년대(31.4%), 지역별 수도권(36.0%), 전반적 평가별 부정적 평가층(31.6%) 등에서 높았음
-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기준으로, ‘전문공사 시공자격 종합업체 부여’가 52.2%, ‘전문업체 종합시공 진출 제한’이 48.2%, ‘입찰 경쟁 과열화’가 44.1%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다음으로 ‘종합공사 시공자격 전문업체 부여’(21.0%), ‘타 업종 진출 업체의 불법 하도급 감행’(15.3%), ‘발주자 혼란 및 행정 부담 증가’(11.7%) 순으로 나타남
 - ‘문제 없다’ 응답과 ‘기타’, ‘잘 모르겠다’ 응답은 각 3.0%, 1.5%, 3.1%임.
- ‘전문업체 종합시공 진출 제한’은 기업유형별 전문업체(30.3%), 매출규모별 10억 미만 (29.3%), 설립연도별 2000년대(29.7%), 지역별 충청권(29.1%) 등에서 높았음

- ‘입찰 경쟁 과열화’는 업종별 종합업체(34.3%), 기업규모별 소기업(26.2%), 전반적 평가별로 긍정적 평가층(29.6%) 등에서 높았음

〈표 2-14〉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1순위 기준, 단위: %)

구분	사례수	전문공사 시공자격 종합업체 부여	전문업체 종합시공 진출 제한	입찰 경쟁 과열화	종합공사 시공자격 전문업체 부여	타 업종 진출 업체의 불법 하도급 감행	발주자 혼란 및 행정 부담 증가	기타	문제 없음	잘 모름	
전체	(1014)	29.6	26.4	21.8	10.0	5.8	4.1	0.7	1.2	0.4	
업종 구분	전문업체	(714)	34.5	30.3	16.5	8.8	5.9	2.8	0.4	0.6	0.3
	종합업체	(300)	18.0	17.3	34.3	12.7	5.7	7.3	1.3	2.7	0.7
기업 유형	영세기업	(703)	32.1	27.9	20.3	9.8	5.0	3.4	0.4	0.9	0.1
	소기업	(286)	23.8	22.7	26.2	10.1	8.0	4.9	1.4	1.7	1.0
	중기업 이상	(25)	24.0	28.0	12.0	12.0	4.0	16.0	0.0	4.0	0.0
매출액 (2022)	10억 미만	(484)	32.4	29.3	21.5	8.5	3.9	2.9	0.6	0.6	0.2
	10~50억 미만	(430)	28.8	24.2	23.5	10.2	6.5	4.2	0.7	1.4	0.5
	50억 이상	(100)	19.0	22.0	16.0	16.0	12.0	10.0	1.0	3.0	1.0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61)	24.6	26.2	24.6	14.8	6.6	3.3	0.0	0.0	0.0
	1990년대	(274)	31.4	27.4	20.8	9.1	6.9	2.9	0.4	1.1	0.0
	2000년대	(381)	25.7	29.7	21.3	9.7	5.2	4.5	1.6	1.3	1.0
	2010년 이후	(298)	33.9	21.5	22.8	10.1	5.4	5.0	0.0	1.3	0.0
보유 업종수	1개	(506)	30.4	22.1	21.7	11.9	7.3	4.0	0.8	1.4	0.4
	2개	(318)	33.3	23.9	22.0	8.8	4.7	5.3	0.6	0.9	0.3
	3개	(137)	22.6	41.6	21.2	7.3	4.4	1.5	0.7	0.0	0.7
	4개 이상	(53)	17.0	43.4	22.6	5.7	1.9	5.7	0.0	3.8	0.0
지역	수도권	(239)	36.0	23.0	18.0	9.2	6.3	5.4	0.8	1.3	0.0
	충청권	(179)	29.6	29.1	20.1	8.4	4.5	6.1	0.6	0.6	1.1
	영남권/강원	(377)	26.3	28.1	22.8	11.9	6.1	2.7	0.8	1.3	0.0
	호남권/제주	(219)	28.3	25.1	25.6	8.7	5.9	3.7	0.5	1.4	0.9
전반적 평가	긍정적 ①+②	(152)	17.1	23.7	29.6	9.9	7.2	6.6	0.0	4.6	1.3
	부정적 ③+④	(854)	31.6	27.0	20.5	10.1	5.5	3.7	0.8	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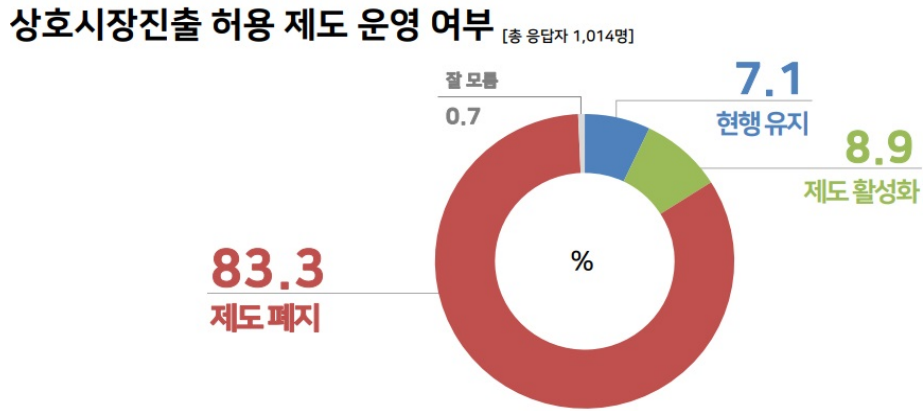


[그림 2-4]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문제점 (단위: %)

(5)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영 여부

- 향후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의 운영에 대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3%로 가장 많았고, '제도를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7%로 조사됨
- 종합 및 전문업종별이나 기업규모, 매출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먼저 업종구분별로 전문업체에서 85.4%, 종합업체에서 78.3%의 응답 비율을 보임
- 기업규모별로 '제도 폐지' 응답은 영세기업에서 86.5%, 소기업(78.7%), 중기업 이상(48.0%) 순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중기업 이상에서는 '제도 활성화' 의견이 28.0%로 영세/소기업(각 7.1%, 11.5%)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매출규모별로 '10억 미만' 업체에서 87.6%, '10억~50억 미만'(81.4%), '50억 이상'(71.0%)로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폐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립연도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영 여부는 상호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88.8%로 타 시도 대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전반적 평가별로 긍정평가층에서는 ‘제도를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던 반면, 부정평가층에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5.4%로 가장 많았음



[그림 2-5]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영 여부 조사 결과 (단위: %)

〈표 2-15〉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의 향후 운영 여부 조사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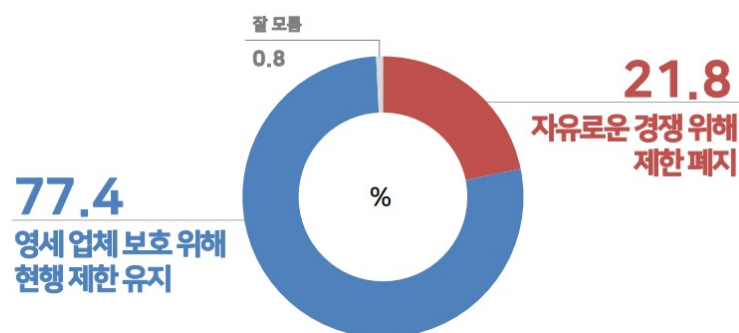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함	현행대로 유지해야 함	제도를 폐지해야 함	잘 모름
전 체		(1014)	8.9	7.1	83.3	0.7
업종 구분	전문업체	(714)	8.0	5.7	85.4	0.8
	종합업체	(300)	11.0	10.3	78.3	0.3
기업 유형	영세기업	(703)	7.1	5.7	86.5	0.7
	소기업	(286)	11.5	9.4	78.7	0.3
	중기업 이상	(25)	28.0	20.0	48.0	4.0
매출액 (2022)	10억 미만	(484)	6.8	4.5	87.6	1.0
	10~50억 미만	(430)	9.3	9.1	81.4	0.2
	50억 이상	(100)	17.0	11.0	71.0	1.0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61)	8.2	8.2	83.6	0.0
	1990년대	(274)	8.8	7.7	83.6	0.0
	2000년대	(381)	9.2	5.8	84.3	0.8
	2010년 이후	(298)	8.7	8.1	81.9	1.3
보유 업종수	1개	(506)	7.9	8.5	82.2	1.4
	2개	(318)	7.5	5.7	86.8	0.0
	3개	(137)	10.2	6.6	83.2	0.0
	4개 이상	(53)	22.6	3.8	73.6	0.0
지역	수도권	(239)	9.6	9.6	80.3	0.4
	충청권	(179)	5.6	5.0	88.8	0.6
	영남권/강원	(377)	10.1	6.9	82.5	0.5
	호남권/제주	(219)	8.7	6.4	83.6	1.4
전반적 평가	긍정적 ①+②	(152)	48.0	32.9	18.4	0.7
	부정적 ③+④	(854)	1.8	2.3	95.4	0.5

(6)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진출 제한 여부

- 현재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이 제한된 것에 대해 '영세 업체 보호를 위해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 이상인 77.4%로 나타난 반면,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8%로 나타나, 두 응답 간 55.6%포인트 격차를 보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8%임

- 세부적으로 종합 및 전문업종이나 기업규모, 매출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현행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음
- 종합 및 전문업종별로 전문업체에서 82.4%로, 종합업체의 65.7%보다 16.7%포인트 높은 것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현행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영세기업에서 80.7%, 소기업(70.6%), 중기업 이상(64.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현행 제한 유지’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별로는 ‘10억 미만’ 업체에서 80.2%, ‘10억~50억 미만’(76.0%), ‘50억 이상’(70.0%)로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현행 제한 유지’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립연도별로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현행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80.3%로 가장 높았음. 그밖에 지역별로 ‘현행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호남권/제주와 영남권/강원에서 각 79.5%, 79.0%로 다른 지역 대비 높았고, 충청권에서는 72.6%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전반적 평가별로 긍정평가층에서는 ‘현행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7.1%,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2%로 조사됨. 반면, 부정평가층에서는 ‘현행 제한 유지’ 응답이 19.9%, ‘제한 폐지’ 응답은 79.3%로 긍·부정 평가층 간 응답 편차가 크게 나타남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제한 여부 [총 응답자 1,014명]



[그림 2-6] 종합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제한 여부 조사 결과 (단위: %)

〈표 2-16〉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의 향후 운영 여부 조사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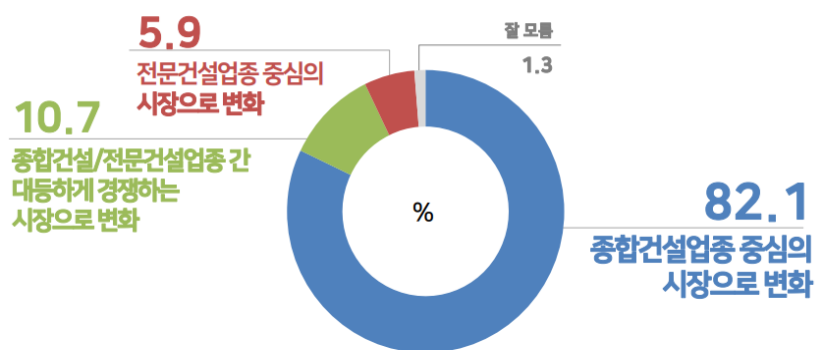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영세 업체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잘 모름
전 체		(1014)	21.8	77.4	0.8
업종 구분	전문업체	(714)	16.8	82.4	0.8
	종합업체	(300)	33.7	65.7	0.7
기업 유형	영세기업	(703)	18.5	80.7	0.9
	소기업	(286)	28.7	70.6	0.7
	중기업 이상	(25)	36.0	64.0	0.0
매출액 (2022)	10억 미만	(484)	18.8	80.2	1.0
	10~50억 미만	(430)	23.7	76.0	0.2
	50억 이상	(100)	28.0	70.0	2.0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61)	19.7	80.3	0.0
	1990년대	(274)	24.1	74.8	1.1
	2000년대	(381)	21.0	78.2	0.8
	2010년 이후	(298)	21.1	78.2	0.7
보유 업종수	1개	(506)	22.3	76.7	1.0
	2개	(318)	21.4	78.0	0.6
	3개	(137)	20.4	78.8	0.7
	4개 이상	(53)	22.6	77.4	0.0
지역	수도권	(239)	21.8	76.6	1.7
	충청권	(179)	27.4	72.6	0.0
	영남권/강원	(377)	20.4	79.0	0.5
	호남권/제주	(219)	19.6	79.5	0.9
전반적 평가	긍정적 ①+②	(152)	32.2	67.1	0.7
	부정적 ③+④	(854)	19.9	79.3	0.8

(7)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향후 전망

-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현행대로 지속 시행될 경우, 향후 건설시장의 전망에 대해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많았고, ‘종합 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는 응답 과 ‘전문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는 응답은 각 10.7%, 5.9%에 그쳤 음. ‘잘 모르겠다’는 1.3%임

- 종합 및 전문업종·기업규모·매출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세부 계층에서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업종별로 전문업체에서 85.4%로 종합업체의 74.0%보다 다소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기업규모별로 영세기업에서 85.6%, 소기업에서 74.5%, 중기업 이상에서 68.0% 순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0억 미만' 매출업체에서 87.4%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립연도별로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1990년대 설립된 기업에서 83.9%로 타 설립연도 업체 대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지역별로 충청권에서 87.2%로 타 시도 대비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호시장진출제도 평가별로 긍정평가층에서는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으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종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42.8%로 다른 계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향후 전망 [총 응답자 1,014명]



[그림 2-7]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건설시장 전망 조사 결과 (단위: %)

〈표 2-17〉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건설시장 변화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사례수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종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화될 것	전문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	잘 모름
전체		(1014)	82.1	10.7	5.9	1.3
업종 구분	전문업체	(714)	85.4	8.4	4.9	1.3
	종합업체	(300)	74.0	16.3	8.3	1.3
기업 유형	영세기업	(703)	85.6	7.5	5.8	1.0
	소기업	(286)	74.5	17.8	5.6	2.1
	중기업 이상	(25)	68.0	20.0	12.0	0.0
매출액 (2022)	10억 미만	(484)	87.4	5.6	5.4	1.7
	10~50억 미만	(430)	78.8	14.2	5.8	1.2
	50억 이상	(100)	70.0	21.0	9.0	0.0
설립 연도	1990년 이전	(61)	83.6	9.8	6.6	0.0
	1990년대	(274)	83.9	11.3	4.0	0.7
	2000년대	(381)	81.6	10.0	6.3	2.1
	2010년 이후	(298)	80.5	11.4	7.0	1.0
보유 업종수	1개	(506)	80.8	11.5	6.5	1.2
	2개	(318)	83.0	9.4	6.0	1.6
	3개	(137)	84.7	10.9	3.6	0.7
	4개 이상	(53)	81.1	11.3	5.7	1.9
지역	수도권	(239)	79.5	11.7	7.1	1.7
	충청권	(179)	87.2	6.7	5.6	0.6
	영남권/강원	(377)	82.8	11.1	5.3	0.8
	호남권/제주	(219)	79.5	12.3	5.9	2.3
전반적 평가	긍정적 ①+②	(152)	49.3	42.8	7.2	0.7
	부정적 ③+④	(854)	88.1	5.0	5.7	1.2

라. 상호시장진출 제도 평가 결과의 시사점

- (전반적인 평가)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의 운영에 따라 현재 종합 및 전문업종별 진출 격차가 큰 가운데 업종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에 대해 종합 및 전문 업종별과 무관하게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음. 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16.2점으로 매우 낮음
 - 업종별로 전문업체에서 부정적 평가가 87.3%로, 종합업체의 77.0%보다 10.3%포인트 차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는 현재 전문업체뿐만이 아니라 종합업체들에게도 부정적인 제도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부정적 평가는 영세기업에서 87.2%, 소기업에서 78.0%, 중기업 이상에서 72.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음. 이는 상호시장진출에 따른 수주격차의 피해가 주로 영세한 전문업체들에게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건설업을 영위한 업력이 길수록 부정적 평가가 높은 특성을 보임
- (경쟁력 향상 평가) 종합 및 전문업체 공통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매출규모 '10억 미만'의 업체들은 93.6%로 대부분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 건설업체를 경영한 업력이 길수록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의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 100점 기준으로 경쟁력 향상 평가 점수는 13.3점으로 매우 낮음
- (기술력 및 품질향상 평가) 종합 및 전문업종·기업규모·매출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세부 계층에서 '향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음
 -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는 종합과 전문업체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건설목적물의 품질향상이 목적중 하나였으나, 당초 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00점 기준으로 경쟁력 향상 평가 점수는 14.4점으로 매우 낮음

- (제도의 문제점)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의 문제점으로 전문업체들은 ‘전문공사 시공자격 종합업체 부여’(34.5%)을 꼽았으며 종합업체들은 ‘입찰 경쟁 과열화’(34.3%)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종합 및 전문업체별 응답이 다른 이유는 현행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 아래에서는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데 반하여 전문업체들은 종합공사 진출 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진출이 어려운 상황의 결과로 보임

- (제도의 지속운영 평가) 종합 및 전문업종과 무관하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먼저 업종구분별로 전문업체에서 85.4%, 종합업체에서 78.3%의 응답 비율을 보임
 - 상호시장진출제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종합 및 전문업체들 공통적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규모별로 ‘제도 폐지’ 응답은 영세기업에서 86.5%, 소기업(78.7%), 중기업 이상(48.0%) 순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동 제도에 의한 매출감소가 주로 영세기업에 집중된 결과로 보임

- (소규모 전문공사보호) 종합 및 전문업종과 무관하게 ‘현행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음. 영세 전문업체들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종합업체나 전문업체나 공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체 매출규모별 응답으로는 ‘10억 미만’ 업체에서 80.2%, ‘10억~50억 미만’이 76.0%, ‘50억 이상’이 70.0%로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현행 제한 유지’를 통하여 전문공사 업역 보호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도운영에 따른 전망 평가)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가 개선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종합(74%) 및 전문업체(85.4%) 공통적으로 종합건설업체 중심의 시장으로 건설시장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가 종합 및 전문업체들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보임
 - 기업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영세기업기업 85.6%, 소기업 74.5%, 중기업 이상 68.0%)

Ⅲ. 상호시장진출 불균형에 따른 전문건설 대응 방안

1. 주요 외국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및 시사점

가. 일본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및 시사점¹⁾

(1) 업종 및 업역

- 일본의 건설업종에는 「토목일식공사」와 「건축일식공사」의 2가지 일식공사와 목공사 미장공사 등의 27종의 전문공사로, 전체 29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미한 공사만을 맡아 영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하도급과 관계없이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건설업 허가시에는 업종마다 일반건설업 허가 또는 특정건설업 허가 중 어느 것이든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업 허가는 건설업자가 공사(수행)하고자 하는 업종 별로 획득해야 하며, 동시에 2개 이상의 허가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추후에 현재 획득하고 있는 허가업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획득하는 것도 가능함
 -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4,000만엔(건축 일식공사의 경우는 6,000만엔) 이상을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토목일식공사 및 건축일식공사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됨
 - ① 종합적인 기획, 지도, 정리(시공계획의 종합적인 기획, 공사전체의 정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공사목적물, 가설물, 공사자재 등의 품질관리, 하도급자 간의 시공 조정, 하도급자에 대한 기술지도, 감독 등)가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
 - ② 대규모이며, 복잡하여 전문공사만으로는 시공이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

1) 조재용(2018)의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대한 자료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㉔ 복수의 전문공사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건설 프로젝트

- 종합적인 기획, 지도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개별 전문공사만으로 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일식공사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종합적인 기획, 지도, 정비 업무(일식공사)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자가 복수의 하도급자에 대해 수행하는 업무(역할)로 규정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 공사는 일식공사가 될 수 없으며, 일식공사허가만으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임

○ 토목 및 건축 일식허가 업종은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기획, 지도, 정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의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업종이 아님.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전문허가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려면 해당 전문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임

○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 일식허가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전문공사의 시공은 해당 전문공사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각각의 세부 전문공사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표 3-1〉 일본 건설산업 허가와 업역

구분	단종공사	복합공사
원도급	전문허가	일식허가 또는 요구되는 전문허가 전부
하도급	전문허가	전문허가

〈표 3-2〉 일본 건설 업종분류(29종)

건설업의 종류	내용
토목일식공사 (土木一式工事)	원도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기획, 지도, 조정 하에 토목 공작물 ²⁾ 을 건설하는 공사 ³⁾
건축일식공사 (建築一式工事)	원도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기획, 지도, 조정 하에 건축물 ⁴⁾ 을 건설 하는 공사
목공사 (大工工事)	공작물에 벽토, 몰탈, 회반죽, 석고를 칠하거나 분사하거나 붙이는 공사
비계, 토공·콘크리트 공사(とび・土工・コ ンクリート工事)	① 족장의 조립, 기계공구, 건설자재 등의 중량물의 운반 배치, 철골 등의 조립을 하는 공사 ② 기초말뚝에 관한 공사 ③ 토사 등의 굴착, 쌓기, 다지는 공사 ④ 콘크리트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 ⑤ 기타 기초 또는 준비 공사

건설업의 종류	내용
석공사(石工事)	석재의 가공 또는 쌓아서 공작물을 축조하고 또는 공작물에 석재를 붙이는 공사
지붕공사(屋根工事)	기와, 슬레이트, 금속 박판 등으로 지붕을 덮는 공사
전기공사(電気工事)	발전 설비, 변전 설비, 송배전 시설, 구내 전기 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관공사(管工事)	냉난방, 냉동, 냉장, 공조, 급배수, 위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금속 등의 파이프를 사용하여 물, 기름, 가스, 수증기 등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배치하는 공사
타일, 벽돌, 블록공사 (タイル・れんが・ブロック工事)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공작물에 벽돌,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설치하거나 붙이는 공사
강구조물 공사 (鋼構造物工事)	형강, 강판 등 철강재의 가공 또는 조립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 공사(鉄筋工事)	철근 등의 강재를 가공하여 접합 또는 조립하는 공사
포장 공사(舗装工事)	도로 등의 지반면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모래, 자갈,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공사
준설 공사 (しゅんせつ工事)	하천, 항만 등의 물길을 준설하는 공사
판금 공사(板金工事)	공작물에 유리를 가공하여 설치하는 공사
도장 공사(塗装工事)	페인트, 도료 등을 공작물에 분사하거나 칠하는 공사
방수공사(防水工事)	건축공사에서 아스팔트 몰탈 실링재 등으로 방수하는 공사
내장마감공사 (内装仕上工事)	목재, 석고보드, 흡음판, 벽지, 다다미, 카펫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
기계기구 설치공사 (機械器具設置工事)	기계기구의 조립 등에 의해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공작물을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공사 단 조립 등을 요구하는 기계기구의 설치공사
단열 공사 (熱絶縁工事)	공작물 또는 공작물의 시설을 보온하는 공사
전기통신공사 (電気通信工事)	유선 전기통신시설, 무선 통신기기, 방송기계설비, 데이터통신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조경공사(造園工事)	나무 와 돌 등을 설치하는 정원, 공원, 녹지 등 지역을 축조, 도로, 건축물의 옥상 등을 녹화하거나 식생을 복원하는 공사
착정공사(さく井工事)	착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천공, 착정을 하는 공사 또는 이러한 공사에 수반하는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建具工事)	공작물에 나무 또는 금속 창호 등을 설치하는 공사
수도시설공사 (水道設備工事)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취수, 정수, 배수 등의 시설을 축조하는 공사 또는 공공 하수도 또는 유역하수도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소방시설공사 (消防施設工事)	화재 경보 설치, 소화 설비, 피난 설비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사

- 2) 인위적인 공작을 가하여 토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3) 이 표에서의 공사는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단일 작업을 의미한다. 즉 토목공작물을 완성하는 모든 작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지도, 조정 작업으로 해석해야함. 이하 건축일식공사도 동일
- 4)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 및 기둥, 벽체를 가진 것(이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을 포함)

(2) 입찰자격 및 하도급

- (입찰자격) 복합공사의 경우 토목 및 건축 일식허가 건설업체에게 도급자격이 있으며 단종공사의 경우 전문허가를 보유한 전문업체에게 도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2개이상의 전문허가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반드시 일식허가 업체에게 도급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며, 종합적인 기획, 지도, 정리 등의 필요성이 없으면 해당 전문허가를 보유한 전문업체에게 도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는 아님
 - 1개의 전문허가로 이루어진 원도급 단종공사가 공사의 규모가 크고, 복잡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기획, 지도 및 조정이 필요하여 개별 전문허가만으로 시공하기 어려운 공사는 일식허가 업체에게 도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개별 전문허가만으로 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일식허가 보유 업체에게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의 업역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려면 해당 전문허가를 보유한 전문업체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원도급자의 경영에 문제가 발생시 계약적 입장이 불리한 하도급자에게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건설업허가에 비해 허가 기준이 강화된 특정건설업허가가 존재함
 -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한 1건의 건설공사에서 포함되는 하도급 계약의 합계금액이 4,000만 엔(건축일식공사에 대해서는 6,000만 엔)이상인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하려면 원도급자가 특정건설업허가가 있어야만 함. 일반건설업허가에 비하여 자기자본금 등의 기준이 높아지고, 하도급대금의 지불과 배치기술자의 기능(자격) 수준도 일반건설업허가에 비해 강화된 조건이 요구됨. 즉 일반건설업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4,000만 엔까지만 다른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특정건설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제한이 없이 다른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음
 - 재하도급 허용 여부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원도급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일괄하도급은 1차 하도급 및 재하도급 모두 금지하고 있음

(3) 일본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시사점

- 수평적인 건설업 구조 및 허가제도
 - 일본의 건설업 허가는 2개의 일식허가와 27개의 전문허가가 병렬로 구성

- 단종공사와 복합공사에서 원도급과 하도급의 어떠한 형태의 공사에서도 전문허가를 가진 업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가 공종에 대해서 수주할 수 있음
- 단종공사는 자신이 해당 전문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원·하도급 수주가 가능하고, 복합공사의 하도급 수주도 이와 동일함
- 복합공사의 원도급 계약은 일반적으로 일식허가를 요구함. 그러나 2개 이상의 공종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에서 필요한 모든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도 원도급으로 수주가 가능하나 일반적이지는 않음
- 일식허가는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하나의 공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합공사의 원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도급권을 부여받고 있음. 그러나 일식허가가 복합공사의 도급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시공권을 의미하지도 않음
- 일식허가에 의해 원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전문허가 없이는 시공이 불가함. 일식허가만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전문허가의 기술자 조건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여 직접 시공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는 일식허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전문허가도 동시에 획득하고 있음
- 일식허가를 포함한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허가는 조건만 만족한다면 상시획득이 가능함. 일본에서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허가가 고착화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획득하고 취소하기 때문에 업역 관련 분쟁은 발생하지 않음

○ 단순하고 낮은 건설업 허가 기준

- 일본에서는 건설업 허가 조건중 자본금의 경우 500만 엔의 자본금이 있으면 복수의 일반건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인정됨. 특정건설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00만 엔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복수의 특정건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중복으로 인정됨
- 일식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미장공사, 창호공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건설업 허가 자본금 기준은 동일하며, 단지 기술자의 요구 자격증이 달라짐
-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에서는 복잡하고 높은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아니라, 전체 기준을 구성하고 이 기준은 모든 건설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음. 일식공사 허가과 전문공사 허가의 등록조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술 자격만 확보한다면 언제든지 수평적으로 확대, 축소할 수 있음

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산업 생산체계⁵⁾ 및 시사점

(1) 업종 및 업역

-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업 종류는 Class A, Class B, B-2, Class C 4가지 임
 - Class A는 General Engineering 업종으로 국내의 토목업종, Class B는 General Building 업종으로 건축업종, Class B-2는 General Building 업종으로 주택리모델링업종, Class C는 Specialty Contractor로 전문업종에 해당하며 42개의 전문업종이 있음 (※참고1 미국 건설업종 참조)
 -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복합공사 또는 단일공사,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도급자격 등 업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General Engineering(A) Contractor(토목종합업종)는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음. 원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제한이 없음
 - 업무범위에 속하는 시설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General Engineering(A) Contractor의 주된 업무이며 엔지니어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점에서 General Engineering(A) Contractor가 수행하는 일의 범위가 넓고 기술적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음
 - General Engineering(A) Contractor의 주된 업무영역은 국내 기준으로 보면, 토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를 기본으로 하며 관계, 배수, 하수, 홍수통제, 운하, 항만, 부두, 조선소, 댐, 수력발전, 간척사업, 철도, 고속도로, 도로, 터널, 공항, 하수, 하수처리설비·시스템, 교량, 고가도로, 지하도로, 원유·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공원, 유원지·놀이시설, 제련소, 화학플랜트·산업설비, 발전소, 발전설비, 광산·야금설비, 토지측량(land leveling) 및 정지(earthmoving projects), 굴착, 경사완화(grading), 도랑(trenching), 포장 등이며, 언급된 공사와 관련된 시멘트 및 콘크리트 작업 등 임
- General Building(B) Contractor(건축종합업종)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성된 주택이나 빌딩 등의 구조물 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음

5) 이종광, 박승국(2018)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의 발췌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신설된 건설업종의 업역을 추가하여 재구성함

- General Building(B) Contractor는 사람, 동물, 동산, 기타 이동 가능한 상대에 대하여 거주나 보호를 목적으로 이미 시공하였거나(built), 시공하고 있거나(being built), 시공할 (to be built)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함
- General Building(B) Contractor는 2가지 이상의 서로 관련성 없는 공종 (building trades or crafts)이 요구되는 구조물을 시공하거나, 그 공사의 전부 또는 부분을 관리(superintend)하는 업무를 함
- General Building(B) Contractor는 원칙적으로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single specialty trade)에 대하여는 원도급계약 할 수 없음.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음
 - 예외 1: Framing(골조) 또는 Carpentry(목공)과 관련된 공종은 단일 공종의 공사라도 원도급계약이 가능함. Framing(골조) 또는 Carpentry(목공) 관련 공사는 전문공사임에도 General Building(B) Contractor가 해당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특칙으로 볼 수 있음. 이 점에 대하여는 주택이나 빌딩 등의 구조물 공사에서 골조(framing)나 목공(carpentry)은 해당 공사의 본질적인 공종이므로, General Building(B) 면허에 Framing(골조) 또는 Carpentry(목공) 면허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가 2개 이상 공종이 연관되어 있는지 판단할 때 Framing 또는 Carpentry 공종은 포함하지 않음
 - 예외 2: General Building(B) Contractor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Class C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Class C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Specialty(C) Contractor)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단일 공종을 원도급계약 할 수 있음
- 건설공사를 하도급(subcontract) 받는 경우, General Building(B) Contractor는 2개 이상의 관련성 없는 공종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에서는 하도급(subcontract) 받을 수 없음. 즉 원칙적으로 General Building(B) Contractor는 하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하도급계약 할 수 없음. 즉 General Building(B)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라도 해당 공종에 합당한 Specialty(C)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단일 공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는 하도급 받을 수 없음. 하도급 받을 공사가 2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도급계약의 경우와 같음. 다만 아래 예외 1과 예외 2의 경우에는 General Building(B) Contractor도 단일 공종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음
 - 예외 1: Framing(골조) or Carpentry(목공)에 대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하도급계약이 가능함
 - 예외 2: General Building(B) Contractor가 스스로 해당 공사에 적합한 Class C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음

〈요약〉

- 하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는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없음
 - 예외적으로 프로젝트에 적합한 Class C(전문업종) 업종의 면허를 보유하면 해당 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음
 - 다만 Framing(골조) 또는 Carpentry(목공) 공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사에 적합한 Class C 업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음
- General Building(B-2) Contractor(주택리모델링업종)는 원칙적으로 3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성된 주택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임
- General Building(B-2) Contractor는 전문공사의 경우 관련 전문업종을 보유하거나 또는 관련 전문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지 않는한 도급 받을 수 없음. 전기, 기계, 배관 시스템 또는 그 구성 부품 또는 그러한 시스템의 일부인 장치를 설치, 교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소규모 수선공사는 도급받을 수 있음
 - General Building(B-2) Contractor는 바닥판, 기초, 하중 지지 벽, 칸막이 및 지붕 구조물을 포함하여 기존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됨
- Specialty Contractor(전문업종)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음. Class C에 속하는 업종을 보유하면 해당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음
- Specialty(C) Contractor는 예술, 경험,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업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획(organize), 관리(administer), 시공(construct)하여 완성(complete)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함. Specialty Contractor는 부수적이거나 보완적인 공사(incidental and supplemental work)는 하도급자를 활용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전문건설업자인 Class C(Specialty(C) Contractor)에 해당하는 업종의 수는 42종으로 과거 한국의 전문건설업 29종보다 더 많음. 대체로 캘리포니아의 전문건설업종은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국내의 습식·방수 업종은 미장, 방수, 조적공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의 습식·방수 업종에서 다루는 일이 Masonry(C-29, 조적), Painting and Decorating(C-33), Lathing and Plastering(C-35, 미장), Ceramic and Mosaic Tile(C-54, 타일)

등으로 더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음

- 반대로 Earthwork and Paving(C-12: 토공·포장) 업종의 경우 국내의 전문건설업 종인 ‘토공’과 ‘포장’이 하나의 업종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Earthwork and Paving(C-12) Contractor는 도로건설 또는 도로포장 공사 입찰에서 General Engineering(A) Contractor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표 3-3〉 미국 건설업 종류별 업역

건설업 종류	원도급		하도급	
	단일	복합	단일	복합
General Engineering (A) Contractor	○	○	○	○
General Building(B) Contractor	※ 제한적으로 허용 ● 골조(framing) 또는 목공 (carpentry) ●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hold the required specialty class) ● 적합한 면허 보유한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subcontract the work to an appropriately licensed specialty contractor)	○	※ 제한적으로 허용 ● 골조(framing) 또는 목공 (carpentry) ●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hold the required specialty class)	○
Specialty(C) Contractor	○	○	○	○

※ Class B-2는 3개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주택리모델링 공사에 도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건설업의 종류와 업무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건설업자가 500달러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면 해당 업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내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두 가지 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음
 - 공공공사에 건설업 면허 없이 입찰할 경우 계약금액의 20%와 4,500달러 중 더 많은 금액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두 가지 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음

〈표 3-4〉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건설업종 분류

클래스	업종
Class A	General Engineering
Class B	General Building
Class B-2	Residential Remodeling
Class C	C-2 Insulation and Acoustical
	C-4 Boiler, Hot Water Heating and Steam Fitting
	C-5 Framing and Rough Carpentry
	C-6 Cabinet, Millwork and Finish Carpentry
	C-7 Low Voltage Systems
	C-8 Concrete
	C-9 Drywall
	C-10 Electrical
	C-11 Elevator Installation
	C-12 Earthwork and Paving
Class C	C-13 Fencing
	C-15 Flooring and Floor Covering
	C-16 Fire Protection
	C-17 Glazing
	C-20 Warm-Air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C-21 Building Moving and Demolition
	C-22 Asbestos Abatement
	C-23 Ornamental Metals
	C-27 Landscaping
	C-28 Lock and Security Equipment
	C-29 Masonry
	C-31 Construction Zone Traffic Control
	C-32 Parking and Highway Improvement
C-33 Painting and Decorating	
C-34 Pipeline	
C-35 Lathing and Plastering	

클래스	업종
	C-36 Plumbing
	C-38 Refrigeration
	C-39 Roofing
	C-42 Sanitation System
	C-43 Sheet Metal
	C-45 Signs
	C-46 Solar
	C-47 General Manufactured Housing
	C-50 Reinforcing Steel
	C-51 Structural Steel
	C-53 Swimming Pool
	C-54 Ceramic and Mosaic Tile
	C-55 Water Conditioning
	C-57 Well-Drilling Water
	C-60 Welding
	C-61 Limited Specialty

(2) 입찰자격 및 하도급

- (입찰자격) 국내와 유사한 종합과 전문건설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입찰시 주요공종을 구성하는 전문업종 면허만을 요구하고 있음.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입찰에 많은 수의 전문업종 면허보유가 필요하지 않음
- <입찰초청 사례 1>의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Widen And Realign Roadway)'에서는 Class A 면허 또는 Class C-12(Earthwork and Paving) 면허를 보유할 것을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음
 - <입찰초청 사례 2>에서도 Class A와 Class C의 해당 업종을 함께 초청하고 있음. 입찰초청 사례 2가 입찰초청 사례 1과 다른 점은 Class C의 경우 공사의 과반을 구성하는 C-12와 C-42 면허의 조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임
 - <입찰초청 사례 3>에서는 예서는 Class C의 경우 건설공사의 과반을 구성하는 복수의 Class C 면허를 조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면허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음

<p><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종합공사 입찰참가자격 사례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Widen And Realign Roadway)' 입찰에서 요구하는 건설업 면허 ◦ 종합면허 Class A(토목) 또는 전문면허 Class C-12(토공과 포장)를 보유한 건설업체 	
공사명	Widen And Realign Roadway
공사금액	\$120,000,000
면허업종(License)	At the time this contract is awarded, the Contractor shall possess either a Class A license or one of the following Class C licences: C-12
<p><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종합공사 입찰참가자격 사례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파이프를 이용한 기존 암거 대체 공사(Replace Four Existing Culverts With Reinforced Concrete Pipe)' 입찰에서 요구하는 건설업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면허 Class A(토목) - 공사의 과반을 구성하는 전문면허인 Class C-12(토공과 포장)와 C-42(위생시스템) 면허를 조합하여 보유한 전문건설업체 	
공사명	Replace Four Existing Culverts With Reinforced Concrete Pipe
공사금액	\$560,000
면허업종(License)	At the time this contract is awarded, the Contractor shall possess either a Class A license or any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Class C licences which constitutes a majority of the work: C-12, C-42.
<p><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종합공사 입찰참가자격 사례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안전 휴게소 재시공 공사(Reconstruct Safety Roadside Rest Area)' 입찰에서 요구하는 건설업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면허 Class A(토목), Class B(건축) - 공사의 과반을 구성하는 전문면허인 Class C(전문) 면허를 조합하여 보유한 전문건설업체 (특정 전문업종을 명기하지 않음) ◦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업종이면 세 가지 면허에 속하는 어떤 업종을 보유하든지 입찰에 참여 가능 	
공사명	Reconstruct Safety Roadside Rest Area
공사금액	\$3,360,000
면허업종(License)	At the time this contract is awarded, the Contractor shall possess either a Class A license or Class B license or a combination of Class C licences which constitutes a majority of the work.

- (하도급 자격) 미국의 경우 토목공사에서는 하도급공사 시공자격에 Class A(토목) 업종과 Class C(전문) 업종에게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공사의 경우 골조(framing) 또는 목공(carpentry) 이외의 단일 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의 경우, 원도급 및 하도급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Class C 건설면허 보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Class B(건축)

업종을 보유한 종합업체가 단일 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를 시공하려면 해당 업종의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거나 해당 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해야 함

- 2차, 3차 등의 재하도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그러나 과도한 중층 하도급은 발주자가 하도급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함)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자 승인아래 자율적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공공사에서는 캘리포니아 하도급공정화법(Subletting and Subcontraction Fair Practices Act)에 따라서 하도급 공사금액이 원도급 입찰금액의 0.5% 이상이 되는 하도급공사는 건별로 모두 해당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를 원도급 입찰시에 미리 지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업체를 지명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지명 공사를 하도급하면 원도급업체는 이 법의 위반으로 벌금과 주건설면허청의 징계 대상이 됨. 단 비상상황이나 필요시 예외적으로 지명하지 않은 하도급공사라도 발주자 승인아래 허용이 가능함

(3)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시사점

○ 현실 적합한 건설업 분류

-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업 종류에서 Class A는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능력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우 넓은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음. 국내 기준으로 보면 토목, 산업·환경설비, 조경과 관련되는 공사를 기본으로 이들 공사와 연관되는 시설물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설업자로 볼 수 있음
- Class B는 주택이나 빌딩 건축시설물의 복합공사를 주로 하며, Class C는 해당 업종의 공사를 주로 수행
- 종합건설업 업종의 수가 2개 불과. 국내는 5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전문건설업종은 Earthwork and Paving(C-12: 토공·포장) 면허와 같이 업무범위가 국내의 전문건설업종에 비해 넓은 업종도 있고 더 세분화된 업종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건설업자는 여러 클래스의 업종 면허를 보유

- 건설업자는 필요에 따라 Class A, Class B, Class C에 속하는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건설업종 보유에 따라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정체성이 명확해져 업종 간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겸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고 업종 간 갈등 완화할 필요 있음

○ 전문건설업종 보호와 육성

- General Building(B) Contractor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 공종으로 이루어진 건설 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는 것에는 제약이 있음
- 즉 하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전문공사는 해당 공종의 Class C 면허를 보유해야 원도급 또는 하도급이 가능함(원도급 시에는 해당 면허를 가진 Specialty(C) Contractor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도 가능)
- General Building(B) Contractor가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까지 무제한으로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Class C에 속하는 면허의 존재 의미가 약화될 것임
- 단일공종의 전문공사 시공을 원칙적으로 Specialty(C) Contractor가 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전문공사 시공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시장 소비자 보호하는 한편, Specialty(C) Contractor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음

2. 전문건설 업역 확보의 필요성

가. 전문업종의 존립 근거 상실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

-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진출 격차가 약 4배인 현재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동안 전문공사 시공기술 역량 확보에 투자해온 전문업종의 존립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게 됨
 - 종합업체에게 단일 전문업종의 모든 전문공사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향후 전문업종의 존재 가치는 약화되며, 업종시스템 유지가 불가능
- 전문업종은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운영되어옴. 건설산업 생태계의 일선에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전문업체의 존립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불가능함
-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 시대에 건설산업에서 ‘타 산업과의 융합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 최일선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건설산업의 진정한 ‘융합과 혁신’은 종합과 전문건설업종간의 무분별한 상호시장진출 경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님

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생산구조 운용

- 일본의 경우 종합적 기획·관리가 필요한 복합공사는 토목일식과 건축일식 업종에게 단일의 전문공사는 전문업종에게 도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 일식 업체가 복합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업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함
 - 종합적 기획·관리가 필요치 않은 2개 이상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업종에게 도급자격 일부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건축공사에서 종합 및 전문간 도급자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건축업종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려면 해당 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 미국 생산구조 시사점) 일본과 미국(건축공사)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해당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에게 부여하고 있음. 즉 전문업종의 업역을 확보하도록 운용하고 있음
- 1개의 종합업종에게 제한 없이 종합 및 전문공사 시공자격 부여
 - 종합업종인 토목·건축 업종의 경우 토목 및 건축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모두 부여하고 있음 (※ 1개의 면허로 모든 공사 수행 가능한 상태임)
 - 전문업종 면허 없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한국 건설산업만의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다.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전문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발생

-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특별 실태 점검('21. 11월~12월) 결과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136개소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적발
 - (사례) 상호시장 진출 시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84%까지 하도급을 준 종합업체 적발
- 전문건설업종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접시공능력에 대한 종합업체의 검증 없이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진출을 허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직접시공능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종합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감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에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임금 지급률이 낮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사고 현장 및 신고 현장 등 총 957개 현장 단속 결과 242개 현장(25.3%)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함
 - (사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종합업체가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등이 주로 적발된 불법 하도급 행위였음

3. 전문건설 대응 방안

가.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확대 및 영구화

-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통하여 영세 전문업체의 보호구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운용 목적은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발주자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발주자 등과 협의 통하여 도입되었으나 국토부의 현행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 2억원 ~ 3.5억원 구간의 일부 전문공사가 보호되고 있음에도 2022년 종합과 전문업체의 상호시장진출 격차는 약 4배에 이르고 있어 전문업체 보호 실효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3년간의 한시적인 보호는 실효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현행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구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합과 전문업체간의 상호시장진출 격차가 매우 큰 것은 당초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설계함에 있어 예측이 잘못되어 보호구간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실효성이 낮은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024년부터 일몰에 의해 폐지될 예정으로 종합건설업체가 보호구간내의 전문공사에 확대 진출 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시장을 잠식당해 전문업체들의 생존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큰 상황임
- 종합과 전문업체간 현격한 상호시장진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구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확대 및 연장을 위해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순공사비 3.5억원과 5억원으로 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임 (※김민철 및 김희국 의원 대표 발의)
- 발의된 전문공사 보호구간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되어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4.3억원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영세 전문업체들의 업역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2024년부터 보호구간이 일부 확대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나 향후 종합과 전문업체간 상호시장진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보호구간의 실효성과 영구화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과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나. 상호시장진출 허용을 발주자 선택사항으로 임의화

- 현재의 상호시장진출 허용은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도록 하고 있음
- 상호시장진출 허용을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자에게 의무화 함으로써 발주자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건설공사는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해당 업종에게 입차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나 현행 상호시장진출은 허용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설계되어 있어 발주자의 판단이나 재량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공사 상호시장진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발주세부기준 제8조를 발주자가 선택하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발주세부기준 제8조 개정만으로도 전문공사의 업역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3-5〉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된 건설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의 임의 규정화 기대효과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하도록 재량권을 부여 함으로써 무분별한 상호시장진출의 일부 해소
 -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하도록 하여 현행 국내 건설산업의 이원적 업종시스템의 작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문업종의 특성 유지가 가능함
 -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판단해야 함
 - 현재 각 지자체 발주담당자들은 전문공사의 종합업종 진출을 허용하는 전문공사의 판단기준과 그 사유에 대하여 모호한 상태이므로, 종합업종의 진출이 허용되는 전문공사 발주 건수 감소 예상
 - 전문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종합업종의 진출은 가능
-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의 임의 규정화 방안 이외에 공사성격 및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종합 및 전문업종을 등록한 업체에게 발주자가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전문건설 업역의 확보가 가능함

다. 발주자 승낙시 동일 업종 하도급 허용함으로써 전문업역 확보

- 전문공사의 대부분은 하도급공사임을 감안할 때 전문건설의 업역을 확보하고 발전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공사의 전문업종 업역화가 필요함
-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예외로 함으로써 전문건설 업역 확보 필요함(〈표 3-6〉 참조)
 - 예시1) 건축공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인 건축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금지
 - 예시2) 토목공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인 토목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금지
 - 예시3) 토목건축공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인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금지
 - 예시와 같이 동일업종에게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하도록 제한

-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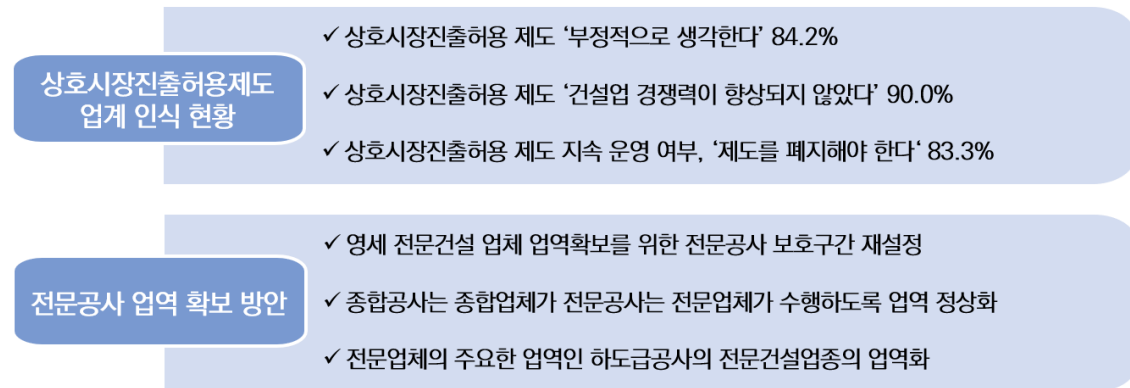
〈표 3-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p> <p>① (생략)</p> <p>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생략)</p> <p>③ (생략)</p> <p>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생략)...하도급할 수 없다</p> <p>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생략)...하도급할 수 있다.</p>	<p>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 <u>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⑤ (삭제)</p>

IV. 결론

- 본 연구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이후 나타난 실태와 업계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건설업의 업역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현재 건설산업은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로 인해 종합과 전문업종간의 갈등 및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음
 - 40여 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크고 작은 문제를 제대로 고치는 노력이 수반될수록 건설생산체계의 정상화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아지게 됨
 -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의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 중 특히 주목받고 있는 문제는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 우위의 수주 불균형이며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업역 기반이 점차 흔들리고 있는 현상임
-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실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문건설업종의 업역이 확보되어야 함
 - 현재의 국내 건설산업 업종이 유지되는 한 업종시스템의 본질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것임. 이를 바탕으로 종합과 전문의 공생발전이 가능해질 것임
- 그동안 수십년 동안 고착되어 있던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문제에 잘 대처하여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에서 나타나는 큰 격차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현상임. 그렇지만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전문건설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이 낮아져 전체 건설산업의 최일선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재설정과 전문건설 업역확보를 통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이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협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그림 4-1] 상호시장진출허용제도의 업계 인식 및 전문건설 업역 확보 방안

- 박승국, 선임연구위원(skpark@ricon.re.kr)
- 이종광, 선임연구위원(jglee@ricon.re.kr)
- 홍성진, 연구위원(hongsj@ricon.re.kr)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혁신위원회(2018),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 김성근(2021),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e대한경제.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1),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2022), 내부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2021), 2021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이승복 외(2016),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국토연구원
- 이종광박승국홍성진(2021),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이종광박승국(2018),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조재용(2018,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 록

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전망 조사

202307-0

LIST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입니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현행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란,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종이 시공하고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종이 시공하는 종전의 생산구조에서, 2021년부터는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포함한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가 개편된 것을 말합니다.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발전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전국 건설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귀하께서 주신 모든 응답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 7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주관기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리얼미터

SQ1. 귀사의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2023년 7월 현재 기준)

- ① 영세기업 (상시근로자수 1~9명) ② 소기업 (상시근로자수 10~49명)
- ③ 중기업 (상시근로자수 50~299명) ④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300~999명)

SQ2. 귀사의 작년 매출액은 연말결산서 기준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억 미만 ② 10~50억 미만
- ③ 50~100억 미만 ④ 100~500억 미만
- ⑤ 500억 이상

SQ3. 귀사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 ① 1990년 이전 ② 1990년대
- ③ 2000년대 ④ 2010년대
- ⑤ 2020년 이후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평가 및 산업발전 만족도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

Q1. 정부가 건설업의 생산자간 공정 경쟁 유도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추진한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현재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정책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 순/역순 배열)

- 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②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③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④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⑤ 잘 모르겠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경쟁력 영향]

Q2. 귀하께서는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 순/역순 배열)

- ① 매우 향상 되었다 ② 어느 정도 향상 되었다
- ③ 별로 향상 되지 않았다 ④ 전혀 향상 되지 않았다
- ⑤ 잘 모르겠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따른 품질 및 기술력 영향]

Q3.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력 향상**

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 순/역순 배열)

- ① 매우 향상 되었다
- ② 어느 정도 향상 되었다
- ③ 별로 향상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향상 되지 않았다
- ⑤ 잘 모르겠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주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Q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지 1~6 무작위 배열)

1순위(가장)_____, 2순위(그다음)_____

- ①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을 전문건설업체에게 부여한 점
- ②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게 부여한 점
- ③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자격(기술능력, 자본금, 업종보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
- ④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
- ⑤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감행
- ⑥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
- ⑦ 기타
- ⑧ 문제점 없다
- ⑨ 잘 모르겠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영 여부]

Q5. 귀하께서는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의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3 순/역순 배열)

- ①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 ②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 ③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종합건설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제한 여부]

Q6. 현재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 무작위 배열)

- 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 ② 영세 업체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허용 도움 여부]

Q7. 2024년부터 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종합공사의 진출이 허용됩니다. 귀하께서는 **컨소시엄 허용이 전문건설업체들의 공공 및 민간 종합공사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4 순/역순 배열)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 향후 전망]

Q8.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가 현행대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귀하께서는 향후 건설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선택지 1~3 순/역순 배열)

- ① 종합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
- ②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이 서로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
- ③ 전문건설업종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
- ④ 잘 모르겠다

Ending.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였습니다.

상호시장진출 현황 및 업계 인식조사에 따른 전문건설 대응 방안

2023년 12월 인쇄

2023년 12월 발행

발행인 김희수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172-9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3